

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3. 8. 19.

제 의 자 : 외 장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50조, 제71조, 제78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외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

☐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 및 총수
 - 위원수 : 5명 이내
- 존속기간 : 의결일로부터 2004년 6월 30까지
- 위원선임 : 위원선임은 의장에 위임